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8구합5466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7. 4.

판 결 선 고 2019.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4,555,600원, 농어촌특별세 25,227,780원, 지방교육세 50,455,56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redacted]광역시의 토지 소유

1) 원고는 주택건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7. 31. [redacted]광역시의 소유이던 [redacted] [redacted]구 B 대 18,724.8㎡에 관하여 2001.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2013. 10. 11. 주식회사 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redacted]광역시는 1993. 11. 23. [redacted] [redacted]구 D 공원 3,656.2㎡에 관하여 1993. 11. 2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토지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13. [redacted]광역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협약(이하 '이 사건 건설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건설협약서(변경)
>
> -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관련-
>
> [redacted]광역시와 원고는 원고의 [redacted] [redacted]구 B, D 토지의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협약서를 체결한다.
>
> 제1조(목적)
>
> 본 협약은 B, D 토지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redacted]광역시와 원고 간에 원활한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제2조(협약대상)
>
> 본 협약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18,724.8㎡) 폐지, 경관녹지(3,656.2㎡) 폐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원고가 2013. 3. 27.(F) 제출한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이라 한다)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제4조(공공시설의 제공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주민제안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무상제공 규모의 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현행 용적률은 실현가능한 350% 이하(건폐율 70% 이하, 층수 5층 이하)로 하고 완화 용적률은 700% 이하로 산정한다.

② 원고는 [redacted]광역시에게 [redacted] [redacted]구 B 토지 면적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 상당인 202.3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건축물(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제공하기로 하며, 추후 건축허가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4조 제2항의 공공시설 가액은 제5조의 설치비용, 제8조의 이행보증료, 기타 공사비 등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준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제공)

① 공공시설은 방송·통신시설로 본 협약서에 첨부된 계획설계도서에 따라 공개홀 1개소, 스튜디오 3개소, 그 밖의 업무시설 등 건축연면적 14,862㎡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redacted]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호를 따른다. (단서 생략)

③ 제4조 제3항에 따른 토지가액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redacted]광역시에게 본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redacted] [redacted]구 B 지상에 설치·준공하여 그 권리를 등기 이전·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및 토지에 관한 합의)

① 제1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B, D 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공동개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원고로 한다. (단서 생략)

③ [redacted]광역시와 원고는 [redacted]광역시 소유 [redacted] [redacted]구 D(토지면적 3,656.2㎡)와 원고 소유 본 협약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상의 B 획지(토지면적 3,656㎡)를 상호 교환하며, 소유권은 위 사업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이전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④ B, D 토지를 원활하게 공동개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본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위 D 토지를 사업시행자(원고 또는 원고가 사업을 위탁한 제3자)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며, 원고는 위 B획지 토지를 [redacted]광역시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다.

제8조(이행보증)

① 원고는 [redacted]광역시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준공 이행담보를 위해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고시)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제8조 제1항의 협약 조건을 이행한 경우 [redacted]광역시는 제2조에 따른 원고의 제안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redacted]광역시가 제9조에서 정한 사항과 원고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제2조에 따른 협약대상 토지는 [redacted]광역시와 원고가 협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준하는 동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한다. (단서 생략)

2)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redacted] [redacted]구 B 대 18,724.8㎡는 그 중 3,656.2㎡ 부분(이 사건 건설협약 제6조 제3항의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상의 B획지 부분이다)이 2017. 5. 1. 분할되어 [redacted] [redacted]구 G으로 되었고, [redacted]광역시의 소유인 위 [redacted] [redacted]구 D 공원 3,656.2㎡는 2017. 3. 21.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3) 원고와 [redacted]광역시는 2017. 5. 25. 이 사건 건설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분할 후 [redacted] [redacted]구 G 대 3,656.2㎡(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라 한다)와 [redacted]광역시의 소유인 위 [redacted] [redacted]구 D 대 3,6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다)을 체결하였고(당시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redacted]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에 관하여 2017. 5. 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redacted]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졌다.

4) 원고와 [redacted]광역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H은 양 토지의 가액이 12,906,386,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였고, 주식회사 I은 양 토지의 가액이 12,321,394,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504,555,6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12,613,89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농어촌특별세 25,227,780원, 지방교육세 50,455,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나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의 법인장부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라. 원고의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원고는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 위에 방송통신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2018.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설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redacted]광역시 앞으로 2018. 5. 14.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협약에 따라 [redacted]광역시에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귀속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득세 과세표준의 위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에 관한 원고의 법인장부가액 2,946,882,401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거나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2,135,586,420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①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② 다만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등의 경우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되(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한시적으로 2018. 12. 31.까지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 규정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그와 같이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동산의 취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2) 취득세 과세표준의 위법 여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 각 호와 같은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 참조). 한편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가액은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① 원고와 [redacted]광역시는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와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redacted]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17조에 따르기로 약정하는 등 교환계약 목적물인 양 토지의 가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확인하는 등 양 토지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다만 양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주식회사 H의 경우 12,906,386,000원으로, 주식회사 I의 경우 12,321,394,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양 토지의 가치 차액을 정산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사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고, 이 경우 교환목적물인 재산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redacted]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은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redacted]광역시장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redacted]광역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가액으로 등재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단서 생략)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07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